



제 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도서관 편의시설에 ‘장애인열람실 포함’ 명시 >

■ 김예지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633호)

2024.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예지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7. 11.

다. 회 부 일 : 2024. 7.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촌 주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및 65세 이상 고령자를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에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아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모든 도서관에 장애인을 위한 전용 열람 공간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모든 도서관에서 장애인열람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7조).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도서관 편의시설에 장애인 열람실이 포함되는 것을 명시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①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도서관 <u>편의시설</u> 의 확충과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2. ----- <u>편의시설(장애인열람실을 포함한다)</u>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도서관의 책무) ①·② (생략)	제7조(도서관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도서관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u>편의시설</u>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	3. <u>편의시설(장애인열람실을 포함한 다)</u> -----
4. · 5. (생략)	4. · 5.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현행법 제6조 및 제7조¹⁾는 장애인, 농어촌 주민, 고령자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 편의시설 확충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도서관은 편의시설 확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은 전체 열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람석으로 설치²⁾해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공공도서관의 경우 장애인등이 시설을 안전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1) 「도서관법」 제6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도서관 편의시설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제7조(도서관의 책무) ③ 도서관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 기준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열람석 또는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	(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가 2천석 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와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 수는 1석으로 본다.

2022년 전국도서관통계에 따르면, 전국 공공도서관 1,236개관 중 장애인·노약자 열람석은 7,820석으로 전체 공공도서관 좌석(359,075석)의 2% 수준임.

개정안은 도서관 편의시설에 장애인열람실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려는 것으로, 모든 도서관에 장애인열람실을 설치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취지는 긍정적임.

다만,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도서관은 장애인 열람석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국·공립 도서관은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열람 환경을 조성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인증 대상으로, 도서관에 대한 장애인등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가 현행 법체계 하에서도 일부 달성된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른 지식정보취약계층³⁾은 장애인, 수급권자, 농어촌 주민, 다문화가족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 장애인 열람실만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것은 법령의 체계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3) 「도서관법 시행령」 제2조(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의 주민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65세 이상인 사람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이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사립 및 소규모도서관에도 장애인열람실을 의무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참고로, 경기도 등 10개 지자체⁴⁾는 별도의 장애인열람실을 구축하는 것 대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비장애 통합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3개 공공도서관 및 4개 지방교육청 등⁵⁾은 모든 도서관에 별도의 열람실을 조성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장애인전용좌석’ 또는 ‘장애인 열람좌석’으로 수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79

4) 경기도, 경기도 화성시·동두천시·고양시·이천시·의정부시·안성시·평택시·파주시, 광주광역시

5) 경상남도, 제주 한라도서관, 서울도서관, 부산광역시립 명장도서관, 충남·제주·세종·서울교육청, 한국도서관협회